

교직원 여비지급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(부속기관 포함)에 근무하는 교직원이 공무로 국내·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여행의 종류) 여행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1. 학교를 대표하는 각종 교육행사, 시찰 및 회의참석
2. 학교의 행정상 공무집행

제3조(출장의 승인) ① 출장을 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출장신청서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고 출장명령서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,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.

1. 교원의 출장은 교학지원처, 직원의 출장은 행정지원처에서 관장한다. 다만, 각 기관장의 출장은 행정지원처에서 관장한다.
2. 공인된 교육, 행사, 시찰 및 회의참석 시에는 그 내용을 증빙하는 관계 공문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.

제4조(여비의 종류) 여비는 운임, 식비, 일비, 숙박비로 한다. <개정 2007.09.01.><개정 2017.07.18.>
<개정 2022.10.26.>

제5조(여비의 계산) 여비는 순로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. 다만, 공무형편 상 또는 천재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의한 여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실지 경과한 노정에 의하여 계산한다.

제6조(여행일수의 계산) 여행일수는 공무로 소요되는 일수에 한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기타 행정지원처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를 포함한다.<개정 2017.07.18>

제6조의1(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 시의 여비) <신설 2017.07.18.><삭제 2019.1.23.>

제6조의2(근무지 외 거주자를 임용한 경우의 여비) <신설 2017.07.18.><삭제 2019.1.23.>

제7조(여비지급의 예외) 외부에서 여비를 지급 받거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8조(상시출장 등의 여비) 상시 출장을 요하는 직원 또는 장기간 체류하는 직원은 따로 그 여비를 정하고 월액 또는 일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교직원이 아닌 자의 여비) 공무수행 상 전임교직원 이외의 자의 동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본교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여비규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의1(이전비의 지급 대상) <삭제 2019.1.23.>

제9조의2(이전비의 지급) <삭제 2019.1.23.>

제9조의3(가족여비) <삭제 2019.1.23.>

제9조의4(준비금) <삭제 2019.1.23.>

제10조(운임의 지급) 교통에 수반되는 운임은 관허요금을 지급한다.

제11조(실비운임의 지급) 특별한 사유, 또는 공무집행상 초과된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지급의 제한) ① 학교나 부속기관의 차량으로 여행할 경우에는 철도운임, 자동차 운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② 승용차를 이용할 때에는 철도임 및 현지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③ 운전원의 근무시간 내 출장 중 여비지급은 고속도로 통행료에 한한다.

제13조(지급기준) ① 여비의 지급기준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<개정 2017.07.18.><개정 2022.10.26.>

② <삭제 2017.07.18.>

③ <삭제 2017.07.18.>

제14조(근무지 내 출장) 여비의 지급기준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22.10.26.>

제15조(출장지역별 여비지급) <삭제 2022.10.26.>

제16조(복명서 제출 및 여비정산) ① 출장복명서는 국내·외 출장의 경우 7일 이내로 작성하여 소속장을 경유 출장명령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전항의 복명서 제출 시에 출장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.

제17조(준용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 <신설 2022.10.26.>

부 칙(2000. 3. 2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1. 1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3. 10. 6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9. 2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3. 12. 4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7. 18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 1. 23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 10. 26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]

<개정, 2007.09.01><개정, 2013.12.04.><개정, 2017.07.18.><삭제2022.10.26.>

[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]

<개정, 2007.09.01.><개정, 2017.07.18><삭제 2019.1.23.>

[별표 3 근무지내여비지급표]

<삭제2022.10.26.>

[별표 4 이전비 지급 기준표]

<신설, 2017.07.18.><삭제 2022.10.26.>